우정인재개발원 공고 제2024 - 17호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시 행 계 획 공 고

2024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우정인재개발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모집청	선발예정인원	직급(직종)	시험 구분	시험과목 (선택형 필기시험)		
서울지방우정청	61명	우정9급 (계리)				
경인지방우정청	111명					
부산지방우정청	35명					
충청지방우정청	42명			총 5과목 ① 한국사		
전남지방우정청	35명		, 05 🗀	공개경쟁 채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사험으로 대체) ② 우편일반 ③ 예금일반	
경북지방우정청	36명			④ 보험일반 ⑤ 컴퓨터일반(기초영어 포함)		
전북지방우정청	17명					
강원지방우정청	18명					
제주지방우정청	7명					
합 계	362명					

(단위: 명)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모집청	모집구분	모집단위(지역)	선발예정인원	
	일 반	서울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53	
서울지방우정청	장애인	(국제우편물류센터 포함)	7	
	저소득 소 계	(61	
	일 반		77	
	장애인	경인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14	
	저소득		2	
거이지바이저처	경기북부권역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연천군	12	
경인지방우정청	이천우체국	이천우체국(이천시)	4	
	덕적우체국	덕적우체국(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	
	연평우체국	연평우체국(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1	
	소계		111	
	일 반	면시되바O저쳐 게하 저 되어	27	
부산지방우정청	장애인 저소득	부산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1	
TUNOTOO	거제/통영권역	거제우체국.통영우체국 관할 전 지역	3	
	소계	/MTM100TM1 C2 C M1	35	
	일 반		29	
	장애인	충청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5	
	저소득		1	
		서산우체국 관할 지역(서산시)		
	충남권역	당진우체국 관할 지역(당진시)	4	
- 충청지방우정청		태안우체국 관할 지역(태안군)		
00/10100		충주우체국 관할 지역(충주시)		
	+ 4 7 2	제천우체국 관할 지역(제천시)		
	충북권역	단양우체국 관할 지역(단양군)	3	
		음성우체국 관할 지역(음성군)		
	ᆺ게	괴산우체국 관할 지역(괴산군)	42	
	<u>소계</u> 일 반		42 22	
	장애인	전남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4	
	저소득		1	
	여수우체국	여수우체국 관할 지역(여수시), 도서지역 포함	2	
전남지방우정청	목포우체국	목포우체국 관할 지역(신안군), 도서지역 포함	2 2	
	완도우체국	완도우체국 관할 지역(완도군), 도서지역 포함		
	진도우체국	진도우체국 관할 지역(진도군), 도서지역 포함	1	
	해남우체국	해남우체국 관할 지역(해남군)	1	
	소계		35	
	일 반	거나지바이저성 기취 된 되어진다고 건나.	29	
 겨브TIHLO저치	장애인 코스트			
경북지방우정청	저소득 울릉 우체국	우르으체구 과하 지여(우르그) 드시지여 표하	1 2	
	소계	울릉우체국 관할 지역(울릉군), 도서지역 포함	36	
	- 1		50	

전북자방우정청	일 반	전북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15
	장애인	선국시하는 66 전을 선 시작	2
	소 계		17
강원지방우정청	일 반	강원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16
	장애인	성전시6구66 전철 전 시국	2
	소 계		18
제주지방우정청	일 반	제주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	7
	소 계		7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9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에는 각 모집단위 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 등에서 근무합니다. ※ 도서지역 포함 모집단위 합격자는 해당 지역의 우체국에서 근무

【참고: 도서지역별 이동시간】

모집청	모집구분	근무우체국	도서지역별 이동시간
거이지바이저처	덕적우체국	덕적우체국	덕적면 :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1시간
경인지방우정청 연평우체국		연평우체국	연평면 :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
	여수우체국	여수우체국 관할 지역(여수시) 우체국, 도서포함	· 거문도우체국 :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 30분 · 연도우체국 :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 · 여수남면우체국 :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1시간 20분 · 여수개도우체국 : 여수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1시간
목포우체국 전남지방우정청		목포우체국 관할 지역(신안군) 우체국, 도서포함	 • 흑산도우체국 :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 • 신의우체국 :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철부선) / 1시간 30분(쾌속선) • 하의우체국 :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 30분 • 비금우체국 :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56분 • 흑산가거도우체국 :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4시간 30분 • 홍도우체국 :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시간 40분
	완도우체국	완도우체국 관할 지역(완도군) 우체국, 도서포함	 금일우체국: 완도당목항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0분 노화우체국: 해남땅끝항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30분 청산도우체국: 완도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50분 완도금당우체국: 장흥노력항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5분 완도보길우체국: 해남땅끝항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35분 완도생일우체국: 완도당목항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25분 완도넙도출장소: 해남땅끝항여객선터미널에서 선편이동 40분
	진도우체국	진도우체국 관할 지역(진도군) 우체국, 도서포함	· 조도우체국 : 진도여객터미널에서 선편이동 40분
경북지방우정청	울릉우체국	울릉우체국 관할 지역 우체국	울릉군 : 포항에서 선편 이동 4~8시간

※【계리직종의 직무 내용】

- 「우체국 금융업무현업 창구업무현금 수납」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업무 등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시험시간 : **80분**(문항당 1분, 과목별 20분 기준)

○ 시험과목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 컴퓨터일반(기초영어^{7문항} 포함) 등 5과목

○ 문제형태 : 객관식 4지 택일형(과목당 20문항)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문항당 5점)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시간 : **25분**(5분 발표 & 질의응답 + 경험·상황 면접)

○ 면접절차 : ① 사전준비 │ 경험·상황과제 작성(20') 및 제출 → 발표과제 검토(10')

② 면접진행 **5분발표 및 질의응답**(10') → **경험·상황 면접**(15')

○ 발표면접 (10분)

- 발표 과제지는 본인이 소지 후 발표 시 활용(면접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음)

※ 과제지의 지시문 하단에 발표할 내용을 메모하여 발표 시 활용 가능

- 5분 발표 후 이어서 면접관의 질의응답

☞ 발표면접 : 우정사업본부 현황 및 시사 등의 지시문(10줄 이내 분량)을 검토하여 의견 발표

- 경험·상황 면접 (15분)
 - 발표면접 종료 후 바로 경험·상황 면접 실시
 - 면접위원은 사전 제출된 경험·상황과제 작성문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 ※ 응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경험·상황과제 작성문은 해당 조의 면접관에게 사전에 배포되며, 면접 시 응시자에게는 별도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 ※ 경험면접 문제는 응시자 전원에게 동일한 공통질문 제시

☞ **경험면접** : 우정직(계리)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

☞ **상황면접** : 가상으로 주어진 업무 등의 상황에서 응시자의 대응전략과 행동 및 태도를 평가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u>2006. 12. 31. 이전 출생자</u>)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다.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 응시자는 <u>공고일('24. 4. 19.)현재</u> 응시하는 <u>지방우정청 거주지역에 주민등록</u>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집청	거주지역	비고
서울지방우정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인지방우정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지방우정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지방우정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남지방우정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북지방우정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북지방우정청	전북특별자치도	
강원지방우정청	강원특별자치도	
제주지방우정청	제주특별자치도	

-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해야 합니다.
- 라.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 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 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

<유의사항>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 대상자) 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 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일반분야에 비 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접수는 할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각 1통**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각 1통**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증빙서류** 【군복무: 주민등록초본 / 교환학생: 학교 발급 서류(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한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첨부**

※ 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발급담당자가 증명서에 수급 기간(개시, 중단이력 포함)을 명시하고, 담당자 직급·성명·확인(도장 또는 서명)·연락처를 기재한 증명서 제출

4.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걘	시합자 소교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24.5.9.(목) 09:00~ 5.14.(화) 09:00 5.13.(월) 21:00 ~5.16.(목) 18:00	5 14 (호h) 09·00	필기시험	7.1.(월)	7.20.(토)	8.23.(금)
	면접시험	9.12.(목)	9.24.(화)~ 9.26.(목)	10.8.(화)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 운영상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 방법·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응시수수료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9.(목) 09:00~5. 13.(월) 21:00까지(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 : 5,000원

<참고사항>

-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발생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內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됩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u>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u>하여야 합니다. <u>응시</u> <u>원서를 접수한 날 기준으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u>가 2명 이상일 경우 처리 비용을 제외한 응시수수료는 추후 반환됩니다.
 -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는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에 사이버국가 고시센터 - 마이페이지 -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제출
- 사진등록 : 원서 제출시 등록하는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응시자 얼굴 정면이 사진**에 나타나고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 사진파일 : 형식(JPG 또는 PNG)/ 규격 (3.5 x 4.5 x 또는 137×177pixel)
- · 등록불가 사진 :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얼굴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

나.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포함)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內,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처리비용을 제외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기간: '24. 5. 14.(화) 09:00~5. 16.(목) 18:00까지
- 원서 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

- 가.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없음

다. 성적 등록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표기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 ('24. 7. 15.~7. 19.)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ШП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015. 5. 6.)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 1) 대상자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2) 가산점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참고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

다. 의사상자 등

- 1) 대상자
 - 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2) 가산점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참고사항>

-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ㆍ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5)에 확인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가산비율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의 응시자 준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 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방우정청 선택사항)
-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우정사업본부·우정인재개발원·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재공고합니다.
- 바.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비정기 시험으로, 시험 실시가 결정되면 사전 공고를 통해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콜센터(☎1800-6634)
 - 기타 시험관련 문의 : 우정인재개발원 인재채용팀(☎041-560-5800)